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형평이 맞도록 취득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이렇게 대외무역업자에게 취득세 면제혜택을 줄 경우 중고차량 등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장치가 요구됨.

3) 기타 안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제3항,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 등에서 적시된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자차법규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목총 “4,500원”을 “4,800원”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적용례) 제28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후단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를 “제2조 및 제4조”로 하고, “호주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중고수출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견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92.1.15) 운